

「KEB 하나 동반성장 통장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제1조 적용범위

이 특약은「KEB하나 동반성장 통장」(구 외환은행) (이하, '이 예금'이라 한다)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'예금거래기본약관' 및 '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'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계정과목

이 예금의 계정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제한사항

이 예금의 출금은 금융결제원 CMS 입금이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·인터넷/스마트폰/텔레뱅킹·CD/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.

제6조 금리적용

- ① 이 예금에는 매영업일 영업점이나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② 이자는 매년 3, 6, 9, 12월 제 3금요일의 다음날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③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- ④ 이 예금의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.

부 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(1)

이 특약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 (2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